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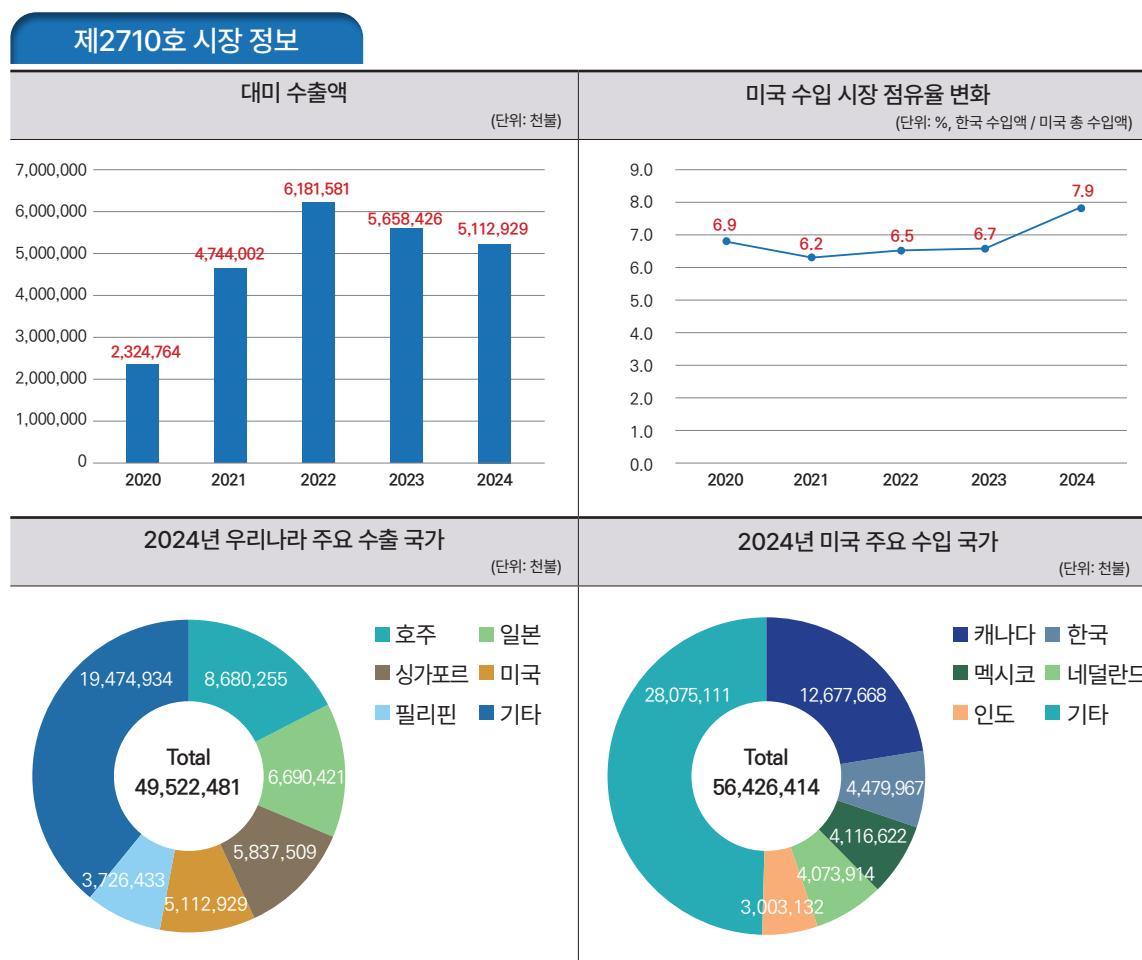
가솔린

요약

사례명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561986 (2001.08.21.)
사실관계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reformate)와 경질 나프타(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용 가솔린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p> <p>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7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0~8%
	미국 기본세율	각 하위 세번별로 상이함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561986 (2021.08.21.)

사실관계

요청자 Vitol S.A., Inc. (대리인: Collier, Shannon, Scott, PLLC)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솔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포메이트 (reformate) 경질 나프타 (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TM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미국 내 가솔린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87 octane 일반 가솔린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
원재료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10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1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와 경질 나프타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

- 혼합 작업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변화는 아래와 같음

항목	밀도	API	R+M/2	RVP	벤젠	황	올레핀	방향족
리포메이트	0.831	38.8	96.1	2.64	1.68	10	1.4	78.6
경질 나프타	0.735	61.1	79.75	10.45	1.36	288	7.5	21.0
가솔린	0.788	51.7	87.1	6.94	1.49	163	4.7	46.9
% 변화 (리포메이트 기준)	-5.2	+31.7	-9.4	+162.9	-11.3	+1530	+235.7	-40.3
% 변화 (경질 나프타 기준)	+7.2	-16.4	+9.2	-33.6	+9.6	-43.4	-37.3	+123.3

2. 완성된 가솔린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CBP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공도 없는 단순한 두 물질의 혼합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5989 (1991.06.24.)*

사례 바하마에서 여러 화합물을 혼합하여 세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를 생산

판정 개별 화합물이 서로 혼합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형성하고 각 성분의 개별적 특성이 더 이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례: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사례 소련산 가스 오일과 이탈리아산 연료유를 혼합하여 연료유 생산

판결 혼합을 통해 생산된 최종 제품은 단순히 혼합하여 섞은 것에 불과하며, 외관, 성질(character), 동일성(identity) 또는 용도(use)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결론

- ✓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③ 시사점

- CBP는 화학물질의 혼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고 화학적 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혼합만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HQ 561986 (2001.08.21.), <https://rulings.cbp.gov/ruling/56198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750030/coastal-states-marketing-inc-v-united-states/?q=C+oastal+States+Marketing%2C+Inc.+v.+United+States%2C+646+F.+Supp.+255+%28C+IT+1986%29>